

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

농림수산위원회

1998. 6. 17.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8년 6월 9일
- 회부일자 : 1998년 6월 9일

다. 상정 일자 : 제148회 임시회

- 제1차농림수산위원회(1998. 6. 17) 상정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김 승 기)

가. 제안 이유

실업우대증 소지자(직계가족포함)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고, 사계절 썰매장 사용료의 50%을 감면하여, 실업의 고통을 분담코자 함

나. 주요 골자

- 실업우대증 소지자(직계가족 포함)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고, 사계절 썰매장 사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
- 위 신설 조항은 1999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 영 웅)

본 개정조례안은,

IMF체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의 고통 분담을 위한 간접실업 대책으로서 실업우대증 소지자와 그 직계 가족에게 충청북도에서 조성하여 관리하는 자연휴양림 이용시 입장료를 면제하고 시설사용료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, 개정 내용은 제7조 입장료면제 조항에 10항 실업우대증 소지자(직계가족포함)를 신설하고, 제7조의 2 입장료 등의 감면 조항에 실업우대증 소지자(직계가족포함)에 대하여는 사계절 썰매장 사용료 50%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며, 부칙에 위 신설 조항을 1999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 실업자의 고통을 국민 모두가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“ 생 략 ”
5. 토 론 요 지: “ 생 략 ”
6. 심 사 결 과: “ 원 안 가 결 ”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 없 음 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 없 음 ”
9. 별 첨

·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